

「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」 업체 설명회

□ 개요

- (목적) 목적·기대 성과 등 공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2세대 스마트축산 확산에 기여하는 유망 업체의 참여 도모
- (시간, 장소) '24. 4.4(목) 14:00~, 축산물품질평가원
- (참석) 축산정책과장(주재),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장, 공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스마트축산 ICT 장비 및 솔루션 업체 등

□ 논의내용

- '24년 스마트 축산 패키지 공모사업 설명
 - * 사업 목적, 추진체계, 참여요건, 지원 내용, 향후 일정 등
- 공모사업 주요 착안 사항
 - * 축종별 ①생산성 향상, ②분뇨·악취저감, ③에너지 절감, ④방역 강화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다종의 ICT 장비와 그 연계 운영에 관한 솔루션 우선 선정
- 패키지 공모사업 관련 질의 응답 등

| 시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4:00~ 14:05('05) | 인사말씀 | 축정과장 |
| 14:05~ 14:15('10) | '24년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 | 담당 사무관 |
| 14:15~ 14:30('15) | 패키지 사업 추진계획 | 축산물품질평가원 |
| 14:30~ 15:25('55) | 공모사업 관련 질의 응답 | 참석자 |
| 15:25~ 15:30('05) | 마무리 말씀 | 축정과장 |

□ 향후계획

- 심사위원 구성(4.22주간), 솔루션 업체 선정(5.6 주간), 지자체 대상 설명회 (5.13주간), 솔루션-보급농가 매칭(6월), 컨설팅-패키지 설치(7월), 사업정산(9월)

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4-22호

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솔루션과 스마트 축산장비를 패키지 형태로 보급하는 “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4년 3월 22일

축산물품질평가원장

1. 사업목적

- 축산 현장문제 극복을 위한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지원
 -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보급하여 축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

2. 용어정의

- (주관기업)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솔루션을 보유·제공 중인 기업*

* 솔루션을 해당 기업에서 직접 개발하였거나, 타 기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의 소유권(영업권은 미인정)을 이관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기업

- (협력기업) 축산농가에 ICT 장비 등을 보급할 수 있는 기업

- (솔루션) 축산데이터에 기반하여 현장문제*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생성된 DATA를 기록/수집/분석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** 또는 응용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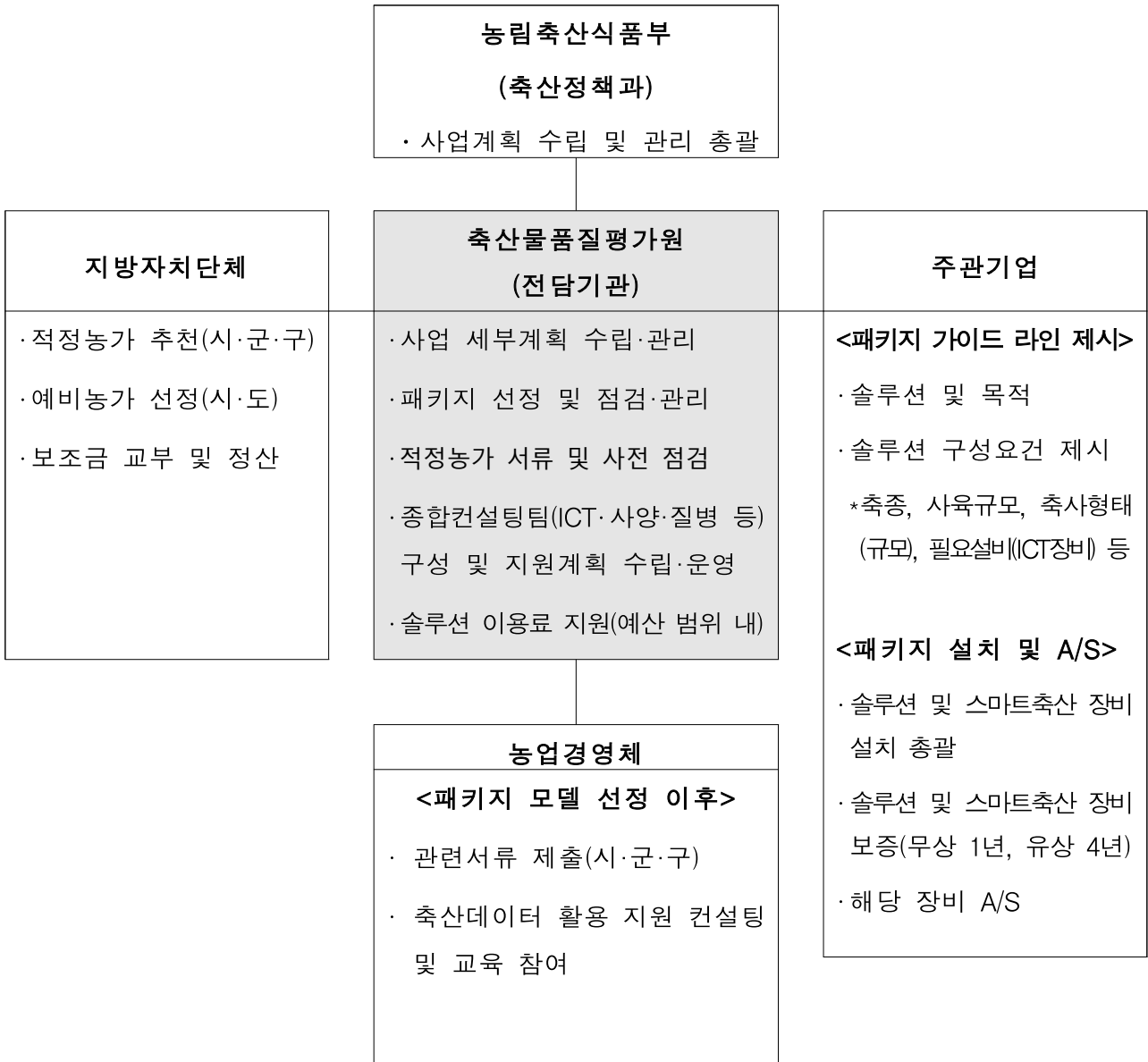
* ①생산성 향상, ②사양·번식관리 효율화, ③약취·탄소저감, ④가축방역 강화, ⑤에너지 효율화 등

** 소·돼지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사양·번식관리 효율화 솔루션은 개체관리를 기본으로 관리해야 함

- (지원농가)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에서 판단한 농업경영체*

* 낙농·한우(50두 이상), 양돈(1,000두), 양계(30,000수, 단, 종계 10,000수) 등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 시행지침 지원대상 농업경영체

3. 추진체계 및 절차



□ 추진 절차

- (품질평가원)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자 선정 → (주관기업) 패키지 설치 가이드를 시·군·구 제시(책자·설명회 등) → (시·군·구) 적용 가능 농가 수요조사 및 시·도에 추천 → (시·도) 사업대상 후보 농가 선정 및 농식품부에 추천 → (농식품부) 최종농가 선정 → (품질평가원) 사전 점검 및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

4. 지원자격 등

□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문제 해결형 **다중(2종 이상)의 스마트축산장비***와 그 연계 운영에 관한 **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** 보급이 가능한 업체

* 스마트장비는 타사가 제작·제공이 가능하며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스마트팜코리아 ICT 장비에 등록된 장비로 제한되며, 해당 장비는 솔루션과 연계되어 활용 또는 제어가 가능해야 함

○ 주관기업은 **솔루션을 중심으로** 그 운영에 필요한 **스마트장비를 패키지**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(보증기간, A/S 계획 등 포함)

- 관련 계획에는 패키지 모델(솔루션 +스마트장비) 도입에 따른 효과(실증결과 있으면 함께 제출)와 해당 모델 세부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

○ 주관기업은 패키지 모델 설치에 따른 **사업효과**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**설치 권장 축산농가**에 대한 가이드*를 제시하여야 함

* 예시) 축종, 사육규모 및 목적, 축사규격·설비, 당면 현장 문제 등

○ 패키지 모델을 지원받으려는 축산농가*는 「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」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[필수 자격 요건]

① 해당 기업에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였거나, 타 기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의 소유권(영업권은 미인정)을 이관받아 서비스 중인 기업

② 한국기업데이터 제공 기업신용등급(회사채, 기업어음, 기업신용평가등급)이 B등급 이상 기업

* 한국기업데이터 상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는 기업 농업법인 등은 심의 과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 평가

5. 지원규모

□ (지원예산) 18,700백만원 내외(참여농가 자부담 제외)

| 구분 | 신규 컨소시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원규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한도 : 2,000백만원 이내(솔루션 비용 포함, 참여농가 자부담 및 이용료(구독료) 제외) ■ 보급 패키지 모델: 20개 내외 선정 ■ 보급 패키지 모델 도입비용: 500백만원 내외(1개 축산농가 기준, 패키지 설치에 필요한 축사 구조와 관련 설비를 확충·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포함) <p>※ 이와 별도로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솔루션 이용 농가의 연간 이용료(구독료)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2년 내외 지원</p> |
| 지원농가 추천 및 선정 (패키지 선정 이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·군·구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 수요조사 후 적합 농가를 시·도에 추천 ※ 솔루션 업체는 도입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를 시·군·구에 제시 ■ 시·도는 추천된 축산농가 지원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에 추천 <p>* ① 사업대상 후보 농가 선정 및 농식품부에 추천 → ② 농식품부는 최종농가 선정 → ③ 품질평가원은 선정된 농가 사전점검 및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</p> |
| 사업비 구성 | 국가보조 30%, 국고용자 50%, 자부담 20%(용자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) |

6. 사업내용

□ 축산농가가 직면한 **현장문제 해소**에 기여하는 패키지 모델(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+그 연계 운영 솔루션) 보급·운영 지원

< 축산 현장문제 예시 >

① 생산성 향상, ② 사양·번식관리 효율화, ③ 약취·탄소저감, ④ 가축 방역 강화, ⑤ 에너지 효율화 등

○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스마트장비를 포괄하여 운영하는 패키지 모델*을 발굴하여 축산농가 보급을 지원

* 예시) (한우/양돈 사양관리모델): 개체관리 + (온습도 측정 → 온습도 조절 → 최적의 사료량 급이 등에 필요한 ①온습도 측정기, ②냉·난방기, ③사료빈 관리기) 등의 스마트장비 세트와 이를 통합제어하는 솔루션

※ 급이량 조정, 가축 건강 체크 등 특정 문제 해소에 관한 개별 ICT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1:1 연계한 패키지 모델은 지양

- 스마트장비 세트와 솔루션 도입·운영에 필요한 축사 구조와 관련 설비를 확충·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포함
- 솔루션 보급 외에 해당 솔루션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*(이용료) 일부도 예산범위 내에서 2년 내외 지원
-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적용에 필요한 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 가능하나, 단순 자동화·기계화를 위한 장비·센서 등 지원 불가*

* 지원불가: ①기본 전기통신/상하수 인입, 서버 구축 등 기반조성 및 자본적 지출, ②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자재(장비, 기자재 등) 구입·구축 비용, ③전기세, 통신비, 가스비 등 공과금

7. 사업신청

- (신청기간) '24. 3. 22. ~ 4. 30. 18:00까지
-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(목)까지
 - 다만, 필요한 인·허가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기간 연장 가능
- (신청절차) 공고에 명시된 E-mail과 방문 또는 우편(등기)접수
 - 제출기한 : 2024년 4월 30일(화) 18:00(기한 내 도착분까지)
 - 제출방법 : 신청 서류를 E-mail*과 우편**이 공모마감 시간까지 모두 제출 시 인정

* E-mail : smart_livestock@ekape.or.kr

**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, 축산물품질평가원 4층 스마트축산지원단

- 과제공모 선정심사 일시 및 장소 :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
- 문의처 :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 스마트축산지원단

* 사업내용, 신청 서류·방법 관련 : 044-410-7302~4

□ 제출서류(순서) 및 목록

| 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| 공모 참가신청서 | [양식1] 참고, 직인 날인 후 PDF 형식으로 제출 |
| 2 | 사업수행 협약서 | [양식2] 참고 |
| 3 | 공동응모 협정서 | [양식3] 참고 *필요시 |
| 4 | 서비스 요약서 | [양식4] 참고 |
| 5 | 사업수행계획서 | [양식5] 참고, 무기명으로 작성 |
| 6 | 참여업체 현황 | [양식6] 참고 |
| 7 | 참여인력 이력사항 | [양식7] 참고 |
| 8 |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[양식7-1] 참고 |
| 9 |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| [양식8] 참고 |
| 10 | 패키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| [양식9] 참고, 기타 실증사례 별도 첨부 가능 |
| 11 | 설치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 | 모식도 및 이미지 등을 활용한 상세 가이드(1~3장) 제출 |
| 12 | 솔루션 소유권 확인서 | PDF 형식으로 제출 |
| 13 | 판매실적 확인서류 | 세금계산서, 거래계약서, 장비·서비스 내역서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|
| 14 | 제품·서비스 사용매뉴얼 | 서비스 소개 카탈로그, 영상 또는 관련 내용 확인가능한 URL |
| 15 | 사업자등록증 | PDF 형식으로 제출 |
| 16 |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완납증명서 |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 증명서로 제출 |
| 17 | 4대보험 가입증명원 | 4대 보험 가입자명부 포함 |
| 18 | 신용평가등급확인서 | 경영상태 파악 |
| 19 | 최근 3개년 재무제표 | 설립일이 3년 미만인 경우 가능 범위 내 제출 당해 설립 기업은 '개시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'으로 대체 |
| 20 | 데이터수집 항목 리스트 | [양식10] 참고, [참고파일1~4] 참고 (해당 리스트를 참고하여, 사업자 선정 후 '데이터 자동연계 가이드 제작·배포 예정') |
| 21 | 발표자료 | 무기명으로 작성, PDF 형식으로 제출, 10분 이내 발표 분량 |

□ 유의사항

- 발표평가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므로 제안서(사업수행계획서, 발표자료)에 기관명을 밝힐 수 없으며, 기관명 명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들이 감점을 할 수 있음
- 본 공모 관련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(최종 선정 후, 원가계산서 발급 비용 포함)

8. 선정 절차 및 기준

□ (선정절차) 주관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, 최종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패키지 모델 선정

| (1차)적격성 검토 | (2차)발표평가 | (3차)현장평가 | 최종 선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, 기타 적정성 등 검토 | ▶ 축산현장 문제 해소방안 패키지 구성보급 데이터 연계, 활용 사례, 사후 관리 등 발표평가 | ▶ 설치 농가 장비서비스 실사 가능 점검 기업체 전문역량 파악 등 현장 평가 | ▶ 최종 선정위원회를 통해 20개 내외 패키지 선정 및 결과 발표, 최종선정 협약 체결 |
| 품질평가원 | 선정위원회 | 선정위원회 | 선정위원회, 품질평가원 |

□ 평가방법 및 기준

- (1차, 적격성 검토)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누락 여부, 필수 자격요건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적정성 검토
 - 품질평가원 담당자가 서류 검토 시,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 또는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
- (2차, 발표평가) 적격성 검토에서 적합 결과를 받은 주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실시
 - 패키지 모델의 적합성 : 축산업계 당면과제*와 그 극복을 위해 보급하려는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성**, 패키지사업의 경제성 등 기대효과***
 - * (예시)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 최대화, 사양관리 최적화, 약취분뇨 최소화, 탄소저감, 가축방역 건강관리 강화, 축산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사업신청자가 생각하는 당면과제 작성
 - ** (예시) 00솔루션 및 그 연계 xx스마트장비는 00센서를 통해 약취 및 풍향·풍속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정 기준 상회 시 약취저감장치를 원격·정밀 가동 등 패키지 장비 성능 등
 - *** (예시) 솔루션과 패키지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연중 축산약취를 일정 수준으로 저감하여 약취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
 -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: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 등의 설치 일정·계획의 구체성*, 사업자의 수행능력**, 컨소시엄 참여 스마트축산장비 현황*** 등
 - * (예시) 컨소시엄 농가별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일정, 컨설팅 및 AS 등 사후관리 계획
 - ** (예시) 특허출원, 상용화(제품화) 및 판매실적, 언론평가, 수출 실적, 고객 만족도 등
 - *** (예시) 장비 종류, 성능, 내구연한, 도입가격, AS 계획 등
 - 시장성 등 : 상용화(제품화) 가능성, 축산농가 등의 수용성, 수출 가능성, 유사 사업에 대한 기 지원 여부 등

- (3차, 현장평가) 1·2차 평가를 통과한 패키지 모델 대상으로 주관기업 및 적용중인 농장 방문, 제품 시연 등을 통한 현장평가 실시
 - (주관기업)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, 서비스 운영·관리 환경, 데이터 관리 및 기업체 전문역량 등에 대해 평가
 - (적용중인 농장) 솔루션 효과성,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평가
- (최종 선정) 발표·현장평가 결과*에 대한 평가위원회 종합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패키지 모델 확정
 - 지원 대상 패키지 모델은 발표 및 현장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, 부적절 사유 발생 시 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□ 평가항목 및 배점

- 평가단계별 항목 및 배점

| 구 분 | 항 목 | 배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(1차) 적격성 검토 |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| 적/부 |
| | 필수 자격요건 부합 여부 - 솔루션 소유권, 제품 판매실적, ICT장비 등록 여부 | 적/부 |
| (2차) 발표평가 (100) | 기업신용등급(정량평가) | 5 |
| | 사업의 이해도 및 보급을 위한 추진전략 - 사업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우수성, 해결방안의 적정성, 컨소시엄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등 - 축산업계 데이터기반 당면과제의 적합성 * ①생산성 향상 ②사양반식관리 효율화 ③의취탄소저감 ④기축병역 강화 ⑤에너지 효율화 등 - 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적합성 등 | 20 |
| | 패키지 모델 구성 및 활용 - 장비 구성 및 설치의 적합성, 자동제어 가능 장비의 다양성, 솔루션 구성 및 복합성, 활용 등의 적정성 - 솔루션 이용료 산정의 적정성, 서비스·솔루션의 상용화 유무 | 25 |
| | 패키지 모델의 데이터 연계 - 데이터 구성, 품질, 보안, 활용 등의 적정성 - 데이터 수집의 다양성(유전, 환경, 사양, 분뇨, 방역, 에너지, 번식, 기타 등) - 데이터 보안 및 관리의 적정성, 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 | 20 |
| | 활용 실적 및 기대효과 - 적용 농가수(서비스농가 포함), 도입 성과, 활용 계획 등의 구체성 - 적용기술의 수출 가능성 등 | 15 |
| | 사후관리(유지보수, 사업관리) 방안 - 품질보증, 유지보수, A/S 등 적정성 - 성과관리 및 계획, 환류 체계, 성과보고 계획 등 | 15 |
| (3차) 현장평가 (100) | 장비 및 서비스 품질점검 - 적용 중인 농가를 방문하여 운영 및 효과 등 점검 | 50 |
| | 서비스 운영·관리에 대한 내·외부 의견 | 30 |
| | 데이터 활용·관리 및 문제 대응체계 | 20 |

*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9. 신청 시 유의 사항

□ 공모 대상 및 자격

- (주관) 축산농가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(제품화)되거나 예정된 서비스·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이 되고 필요시 주요 스마트축산장비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
 - 1개 기업 이상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, 컨소시엄 내부 계획수립 및 이행을 전담하여 추진할 주(主)사업자를 지정
- (기업) ①제공업체는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기간 내 장비·서비스를 농가에 보급·적용이 가능하고 ②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
 -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팜코리아에 표준화·규격화된 데이터 제공 필수*(장비 설치 이후부터 발생한 데이터)
 - * 선정된 기업은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A/S를 2년 이상 축산농가에 제공하여야 함

□ 신청 제외대상

- 정부,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*을 수행 중인 경우(타 유사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)
 - * 본 사업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- 본 사업 선발 이후 타 정부 지원 사업의 참가는 해당 사업의 중복수혜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신청기관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내용이 불건전하거나,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자사의 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서비스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
 - * 다만, 솔루션 업체는 자체 개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장비를 포함해 패키지를 구성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
-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기업,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, 휴업 및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- 허위 공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- *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
-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, 사업 공모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, 의무사항 불이행(보고서 미제출, 사후관리 미흡 등) 및 기타 부정행위(기술 도용 등) 기록이 있는 경우
- 사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 중 이거나,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
-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[예외사항]

- ① 신청·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
- ②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
-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

□ 유의사항

- 공모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제출

- ◆ 발표평가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므로 제안서(예비사업계획서, 발표자료)에 업체명을 밝힐 수 없으며, 업체명 명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들이 감점을 할 수 있음
- ◆ 신청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◆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제안 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- ◆ 실증사업 수행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- ◆ 상기 신청 서류 외 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설명 자료 제출 시는 자유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
- ◆ 원본 직인 누락 또는 신청서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접수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
- ◆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◆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, 신청서별 평가 내용,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
- ◆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해석에 따름

10. 추진일정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(3월) | 과제 공모 | (품질평가원) | 스마트팜코리아, 홈페이지 등 |
| | ↓ | | |
| (4월) | 과제 제안서 접수 | (주관기업 → 품질평가원) | 공모신청서, 예비사업계획서 접수 |
| | ↓ | | |
| (5월) | 적격성 검토 | (품질평가원) | 자격요건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, 기타 적정성 등 검토 |
| | ↓ | | |
| | 사업계획서 평가·심의·조정 | (품질평가원, 선정위원회) | 위원회 구성, 제안내용 평가 과제 내용 및 예산 심의·조정 (평가결과, 예산규모 등 고려) |
| | ↓ | | |
| | 수행계획서 보완·제출 지자체 알림 | (주관기업) | 최종확정 수행계획서 제출 |
| | ↓ | | |
| (6월) | 지원대상 농가 선정 | 시·도 추천을 받아 농식품부가 선정 | 시·군·구 및 시·도는 지원대상 농가의 축종, 사육규모,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선정 후 농식품부에 추천 |
| | ↓ | | |
| | 사전컨설팅 추진 및 협약체결 | (품질평가원 ↔ 주관기업) | 농가컨설팅 및 최종확정 후 과제수행 협약체결 |
| | ↓ | | |
| | 사업승인 및 사업비 지급 | (품질평가원, 농식품부) | 사업 지원금 집행 |
| | ↓ | | |
| | 사업 추진 | (주관기업) | 주관기업 중심으로 사업수행 |
| | ↓ | | |
| | 사업 운영 및 관리 | (품질평가원) | 컨소시엄별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사용 현황 상시 점검 등 관리 |
| | ↓ | | |
| (9월) | 중간보고 및 중간점검 | (품질평가원, 주관기업) | 중간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|
| | ↓ | | |
| (10월) | 결과보고 및 정산 | (농식품부, 주관기업) |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|
| | ↓ | | |
| | 최종평가 | (품질평가원 → 농식품부 보고) | 최종 평가 및 집행예산 검토·정산 |

11. 세부추진절차

가. 지원사업 신청

-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붙임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여 '사업계획서' 등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
-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이 미비하거나 제출자료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과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
- *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

나. 지원사업자 선정

-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(발표평가, 현장평가)를 거쳐 합산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참여기업 중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

다. 협약체결

- 협약 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·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

라. 사업수행

-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솔루션 및 장비도입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- 주관기업은 사업 진행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주관기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 보급의 성과점검을 위해 지원사업 전·후에 농가별 성과수준 진단을 실시해야 함
-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이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, 주관기업은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

마. 사업완료

- 지원받은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내에 축산농가에 스마트장비, 솔루션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완료
- 주관기업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,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 효과가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시 운영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바. 사업비 정산 및 검증

-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(잔금)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,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시·군·구에 제출하여야 함
 - * 주관기업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,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 받아야함

사. 연차별 성과 활용 보고

-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연도 후 2년간 성과활용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매년 1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운영기관은 2년에 걸쳐 성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, 단 한·육우의 경우 3년
-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후 2년간 반기 1회 유지·보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
 - * 매년 5월,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
- 주관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 연차보고 누락 허위보고 등에 대해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